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50706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나6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5070649 판결

전문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A

변론 종결 2019. 9. 26.

판결 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4,452,797원 및 그중 81,328,657원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7. 18.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9. 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9. 1. 3. 접수 제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9. 1.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9. 2.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 1. 4. 접수 제2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 2. 8. 접수 제2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3. 11.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2. 25.(이후 최종적으로 2018. 11. 14.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2010. 3.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 제5조에 제1항 제8호는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8. 10. 27. 이후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8. 11. 14.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C은 2018. 11. 23.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3. 26. C에 81,328,657원(= 원금80,000,000원 + 이자 1,328,6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660,380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2,463,76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9. 1. 3. 접수제218호로 채권최고액 6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4.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 1. 4. 접수제242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 2. 8. 접수제2019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위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84,452,797원(= 81,328,657원 + 660,380원 + 2,463,760원) 및 그중 81,328,6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7. 18.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는 2019. 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9. 1.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9. 2.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고,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2018. 11. 23.경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1) 피고 A의 적극재산

갑 제13, 1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의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776,589원이다.

	적극재산	금액(원)
1	사천시 D 도로 192m ²	2,649,600 ¹⁾
2	사천시 E 임야 952m ²	116,429,600 ²⁾
3	사천시 F 도로 60m ²	2,016,000 ³⁾
4	경북 청도군 G 임야 8,331m ² 중 165/8,331	356,400 ⁴⁾
5	경북 청도군 H 임야 21,818m ² 중 51/54	28,848,244 ⁵⁾
6	경북 청도군 I 임야 9,909m ²	7,976,745 ⁶⁾
7	대구 북구 J아파트 K호	82,500,000 ⁷⁾
		240,776,589

2) 피고 A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의 사해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은 피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6,442,205원이다.

	채권자	금액(원)
1	원고	80,000,000 ⁸⁾
2	L조합 북대구지점 신용대출	7,000,000
3	L조합 삼천포	50,000,000
4	M 주식회사	6,793,787
5	주식회사 N	18,100,980
6	주식회사 O	5,343,438
7	P조합	63,000,000
8	Q 주식회사	26,204,000
		256,442,205

3) 따라서 피고 A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A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1) 13,800원 × 192m²(갑 제13호증의 1)

2) $122,300\text{원} \times 952\text{m}^2$ (갑 제13호증의 2)

3) $33,600\text{원} \times 60\text{m}^2$ (갑 제13호증의 3)

4) $2,160\text{원} \times 8,331\text{m}^2 \times 165/8331$ (갑 제13호증의 4)

5) $1,400\text{원} \times 21,818\text{m}^2 \times 51/54$, 원 미만 버림 (갑 제13호증의 5)

6) $805\text{원} \times 9,909\text{m}^2$ (갑 제13호증의 6)

7) 갑 제14호증

8) 사후구상권 발생 전이므로 편의상 원금만 계산